

은 알아보지 못한다. 총체적 한류가 뻗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되 실속, 즉 저작권, 지재권을 챙겨 사후 70년, 아니 700년, 7000년 보장 받는 문화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난 5000년의 문화유산과 ‘빨리빨리’ 경제를 일으키는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IQ도 있다(『저작권 문화』 2007년 9월호 게재. 글을 다소 새롭게 함).

교수의 정년퇴임 연령 65세는 자율화 되어야 한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한 인 규

우리나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들은 65세의 나이에 이르면 무조건 정년퇴임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이 빈곤하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에도 이르지 못하던 1960년대에 제정된 이 정년퇴임 연령규정은 이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우리 교수 사회에서는 나이가 65세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건강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명성에 걸맞는 3년 이상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학 원생도 여러 명 확보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다. 그러나 일단 정년을 하게 되면 그는 대학 교수실과 강단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현실이다.

20여 년 전에 미국 코넬 대학교의 Rhodes 제9대 총장이 우리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다. 그때 그분의 주된 방한 목적은 개교 12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 졸업생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학들은 그 지명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단과대학의 학장이나 그 대학교의 총장이 될 사람은 fund raising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야 한다. 그런 탓에 그 Rhodes 총장께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졸업생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모으러 다니던 중이었다. 그 분에게 그때 우리 대학교의 총장이셨던 조완규 명예교수님께서 귀 대학에도 교수의 정년퇴임 연령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어느 교수이든 정년을 어떤 연령에 해야 된다는 제한 조건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십 년 전에 이런 규정이 직장생활에 있어서 성과 나이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후 정년퇴임 시기는 오직 교수 자신만이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민의 취업권은 나이나 성(性)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하니 지금의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정년퇴임 연령에 관한 제한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학들은 입시제도나 대학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인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런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대학들이 스스로 모든 학사행정에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저런 일에 자율성이 확보되어지는 날이 오면 정년퇴임도 정년퇴임할 교수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미국 대학의 경우 정년 연령이 오래 전에 철폐되었으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65세의 나이에 이르러 교단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연금이 60세를 넘어야 지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수가 이 나이에 이를 때까지는 교수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10~20%가량의 교수들은 60세의 나이에 이르면 이른바 조기정년(early retirement)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60~70%)은 65세 전후에 정년퇴임을 하고, 10~20%의 아직도 건강하고 대형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교수들은 70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에 이르도록 교수생활을 지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 하면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0세로 연장된 지금 교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와 회사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는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그 나라의 형편과 제도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정년 연령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중이다. 우수한 석학 교수가 더 오래 교수생활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65세의 나이에 이르렀다고 강제로 캠퍼스로부터 내모는 일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이 정년 연령 문제를 당사자인 대학이 나서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대학인들은 물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교수들의 정년퇴임 연령을 65세로 규정한 것도 일종의 해묵은 행정규제라고 생각한다. 속히 철폐되어야 할 일종의 시대착오적 규제를 정부는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묻고 싶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산 시스템 통합을 건의한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이 인 규

며칠 전 혈압과 전립선 검진을 위한 정기적인 진료 때문에 이른 아침 공복에 피를 뽑기 위하여 동송동의 병원으로 갔다. 진료 카드를 제시하고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채혈을 당부했더니, 혈압 진료는 여기서 하지만, 전립선 진료는 분당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채혈을 하려면 분당 병원에서 발급하는 검사의뢰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접수처 간호사와 몇 마디 말이